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000호

「철도운임 산정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0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철도운임 산정기준」 제정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철도사업법」 제9조 등 관련 법령*에 따라 철도운임 산정을 위한 「철도운임 산정기준」(훈령)의 유효기간 만료('23.6)로 제정 필요

* 철도사업법 제9조,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, 공공요금 산정기준(기재부 훈령)

2. 주요 내용

가. 공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검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요금 산정기준(기재부 훈령)에 부합하도록 제정

※ 철도운임 산정기준(국토교통부 훈령 제2020-1295호)과 내용 동일

나. 재검토기한 설정

* 동 훈령은 「철도사업법」 제9조,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5항, 「공공요금 산정기준」(기재부 훈령) 근거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,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으로 설정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철도운영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
- 전자우편 : deepnature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597(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)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-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(전화 044-201-4632, 3973, 팩스 044-201-559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